

창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가합1026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국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수현

피고 보조참가인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임장범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용연

변론 종결2024. 9. 5.

판결 선고2024. 10. 1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고도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9. 6. 체결한 매매계약을 4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정 및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아래와 같이 거시하는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모두 금속자재를 가공,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참조).

나.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금속자재 납품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0938호, 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23. 8. 17.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674,510,877원 및 그중 465,012,393원에 대하여는 2020. 2. 25.부터, 209,498,484원에 대하여는 2020. 7.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2023. 11. 28.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 분할하여 2024. 6. 30.까지 2억 원을, 2024. 12. 31.까지 2억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나12848호, 을나 제6호증 참조]. 다. 피고는 2023. 9. 6.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3.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23.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을 제5호증, 갑 제2호증 참조).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래 2019. 4. 4.자로 주식회사 D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및 2015. 12. 11.자로 채무자를 피고보조참가인, 채권최고액을 58억 9,92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2023. 9. 13.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04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가치가 있는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피보전채권인 4억 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의 조정에서 확정된 것과 같이 금속자재 납품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4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인정 여부

1)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10호증, 을 제4, 6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5,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보조참가인의 담보가치가 있는 유일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 채무초과상태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부산 사상구 F 임야 18,631㎡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21. 6. 4.를 기준시점으로 하는 감정평가가액은 1,565,004,000원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토지에는 채무자를 피고보조참가인, 채권최고액을 260,000,000원으로 하여 2009. 3. 20.자로 마쳐진 주식회사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날 주식회사 E에 대하여 마쳐진 지상권설정등기가 있었고, 그 밖에 다른 담보권 설정은 되어 있지 않았다. 위 토지의 가액에서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1,305,004,000원에 이르고, 이는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변제하기에도 충분한 액수이므로, 위 토지는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과 가까운 2022년 연말을 기준으로 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자산 총계는 11,798,117,175원이고, 부채 총계는 8,253,920,575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3,544,196,600원(= 11,798,117,175원 - 8,253,920,575원) 초과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재무상태표와 달리 실제로는 더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자산이 과도하게 계상되어 실질적으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95억 3,500만 원으로 산정한 감정평가를 받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액수를 위 가액에 근접한 9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95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2023. 9. 5.부터 2023. 9. 13.까지 전액 피고보조참가인의 E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2023. 9. 13. 채권최고액을 58억 9,920만원으로 하는 이 사건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이를 피고보조참가인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타에 소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이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거쳐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상당한 액수를 예금채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책임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중간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문식

판사차선영

판사홍대훈

별지